

 <b>외교통상부</b> <small>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small>	<h1>보도자료</h1> <h2>PRESS RELEASE</h2>	<b>성숙한 세계국가</b> <small>외교통상부가 앞장서겠습니다</small>
<b>제11-999호 배포일시 : 2011.11.2(수)</b> <b>문의 :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FTA정책국 심의관) 김영무(☎:2100-8120)</b>		

제 목 :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등  
제하 경향신문 기사(11.2) 관련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등 제하 11.2(수) 경향신문 기사 (김지환·장은교 기자 등)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오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 및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관련**

**(기사내용)**

- “한·미 FTA 협정문은 ‘FTA에 편입된 투자자-국가 제소에 의해 제소국은 패소한 상대국의 불이행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국이 국제중재에서 패소한 뒤 재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FTA 특혜관세의 정지라는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 ISD 중재재판부의 국가패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국이 그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모국이 이를 FTA상의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동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결과를 피청구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 관세혜택의 정지와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FTA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사안임.

- WTO 체제에서도 분쟁해결 절차상 피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 승인을 얻어 피소국에 대한 양허나 그 밖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음.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ISD 중재판정 불이행이 곧바로 상대국의 무역보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역보복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인 바, 동 기사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관계를 누락하였음.

※ 중재판정 불이행 이후 무역보복까지의 절차

- ① 투자자의 모국이 동 분쟁을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② 패널 구성
- ③ 동 중재판정 불이행이 FTA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 판정 확보
- ④ 피청구국이 패널의 판정 불이행시, 투자자의 모국이 무역보복 추진 가능

### (기사내용)

- “한국 정부는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일본, 유럽공동체 등과 함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포함돼선 안된다’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제출”
- 이는 투자자 보호는 무역 규범내에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 (사실관계)

- 2003년 제6차 칸쿤 WTO 각료회의는 농업, 비농산물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선진국-개도국간 극한 대립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협상으로서, - 투자 분야는 소위 “싱가폴 이슈”의 4개 이슈중 하나로 DDA협상에 포함할지 여부 그 자체가 쟁점이었음.
- 우리는 동 협상시 ISD 등 별도의 분쟁해결절차를 신규 도입하기보다는 기존의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활용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바, 이는 다자차원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모습이 당시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입장이었음.

- 이러한 다자차원의 입장과 병행하여 우리는 양자차원의 투자협정(BIT)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였는 바, 2001~2003년간 총 12개를 체결하였으며 모두 ISD를 포함하고 있음.

### (기사내용)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자료를 보면 투자자-국가소송제로 인한 분쟁은 2009년 말 현재 모두 357건이고, 이 가운데 202건(57%)은 최근 5년 사이 발생했다. 국제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 분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사실관계)

- ISD 분쟁이 최근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세계화” 조류에 따라 해외투자가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신규 ISD 피청구국들은 대부분 국내법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이거나, 행정력이 낙후된 국가임을 유념필요
- 상기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제소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행정제도가 공정/공평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관련

### (기사내용)

- “이종훈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적용범위는 투자협정보다 한·미 FTA가 훨씬 더 넓어 국내 산업 보호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사실관계)

- FTA가 BIT보다 반드시 투자자 보호 범위가 넓어 제소 가능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음.

- ISD 제기는 협정상의 의무위반을 실체적 요건으로 하는데, FTA와 BIT 간에 이러한 협정상의 의무 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투자자의 보호 범위가 “설립전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ISD 제기 대상이 넓어진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

※ 한·일 BIT에서처럼 BIT에서도 ‘설립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어 BIT가 반드시 ‘설립후 투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님.

### 3. “건보 당연지정제 소송당할 수도” 관련

#### (기사내용)

- o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보장성 강화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캐나다에서 민간 의료클리닉 분야에서 투자한 미국의 영리병원 트러스트 기업인 센츄리온은 2008년 7월 캐나다 연방보건법을 중재 절차에 회부한 적이 있다.”
- o “대기업이 두부나 콩나물 등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해 사업에서 철수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업 철수로 기업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 (사실관계)

- o 공적 건강보험체계와 관련된 우리 정부 정책은 한·미 FTA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협정 제13.1조제3항가호) ISD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ISD 대상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 따라서, 한·미 FTA 발효 후에도 우리 정부가 공적 건강보험과 관련된 조치를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o 기사에서 예시한 Centurion 대 캐나다 사건(2008)은 캐나다내 의과 수술시설 설립(보건의료서비스)과 관련된 캐나다 정부의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으로서 공적건강보험에 대한 것이 아니었음. 캐나다는 NAFTA에서 우리와는 달리 보건의료서비스를 유보하지 않았음.

- 참고로 동 사건은 청구인이 공탁금을 예치하지 않아 중재 절차가 종료되었음.
- o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ISD 제기 가능성은 예단할 수 없음.
  -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해당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 수용에 해당되어 ISD 제기근거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FTA상의 판단 기준(경제적 효과, 정부 조치의 성격, 합리적 기대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국가정책에 의해 대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FTA 규정여부를 떠나 우리 헌법상 당연한 것임.

#### 4. “중남미, 미국 상대 제소 사례 없어” 관련

##### (기사내용)

- o “야당은 중남미 국가들은 FTA를 체결한 미국을 상대로 소송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 o “야당은 재판소 인적 구성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 “이 요건은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 (사실관계)

- o 기사 내용은 중남미 국가들의 對美 투자가 미미하다는 현황을 무시한 논리적 비약임.
  - \* 미 통계국(Census Bureau)의 2009년 기준 통계를 보면, 대미 총투자액 2조 1,145억불 중 중남미지역의 대미 투자액은 147억불에 불과(전체의 0.7%)

- NAFTA의 경우, 멕시코 기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1건을 제기 (Canacar v. 미국(2009), 현재 계류중)한 바 있음.
- 제도적·경험적으로 제3의 중재인을 워싱턴에 소재한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중재판정부가 중립적이지 못하며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무엇보다도 ISD상 개별 미국 기업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이해가 반드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없음.
  - 설례로, NAFTA의 ISD 사례 중 ICSID에서 중재판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었던 사례 총 13건을 분석한 결과, 중재인 임명과 판정의 편파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사례 9건중 미측에 유리한 판정 6건, 불리한 판정 3건이 있었던 반면, ICSID 사무총장이 임명한 사례 4건중 미측에 유리한 판정 2건, 불리한 판정 2건이 있었음.

## 5.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 소송'" 관련

### (기사내용)

- "대한민국 헌법은 123조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냉혹한 국제 질서가 적용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볼리비아와 페루의 사례는 생생이 경고하고 있다."

### (사실관계)

- 기사에서 언급한 베델 대 볼리비아 사건은 분쟁당사자 간 합의로 중재가 종료되어, 투자자 주장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에 대한 배상금 지불은 없었음.
- 동 사건의 근거가 된 네덜란드-볼리비아 BIT는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을 규정하였으나, 한·미 FTA와 같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유보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한·미 FTA에는 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을 포함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포괄 유보 등 공공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 ※ 규제를 도입·강화할 수 있는 “미래유보(부속서II)”에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전기·가스·환경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초·중등 교육 및 성인교육 등 44개 분야를 기재하여 공공정책 자율권을 확보

### (기사내용)

- o “1997년 과테말라의 철도운영권을 따낸 다국적회사 RDC는 과테말라 정부가 철로 부근에 사는 불법거주자를 퇴거시키지 않자,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과테말라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 (사실관계)

- o 동 사건은 현재 진행중으로, 현 시점에서 동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참고로, 동 사건에서 투자자(RDC)와 과테말라 정부는 1997년 50년간 철로시스템 재건·운영 및 사용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과테말라 정부가 2006년 8월 철로 사용권이 국익에 반한다는 결의서 (Lesivo Resolution)를 채택하였음.
  - 결의서 채택 이후 RDC에 대한 외부 투자가 끊겼으며, 2007년 9월 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강도들이 철도를 해체함에 따라 상당부분의 교량과 철로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기사내용)

- o “페루 납 생산업체인 도 런 페루사의 최대주주인 렌코는 페루 국민들이 납 중독 문제로 도 런 페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자, ‘페루 정부가 불공정하게 다뤘다’며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 (사실관계)

- 동 사건의 경우, 2010년 12월에 중재의향서가 제출되어 중재 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현 시점에서 동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움.
  - 참고로, 도 런 페루社(DRP)는 페루 정부와 페루 라오로야시의 오염정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페루 정부는 DRP에 제3자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서면 약속하였음.
  - DRP는 페루정부가 2007년에 페루 라오로야시의 주민들이 DRP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투자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끝 /

##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